

• 21세기 미래문화도시 • 더불어 행복도시 • 사람중심 열린도시



연수구보



함께 여는 미래. 더불어 누리는 행복.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1288호 2022. 1. 3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5호(공인등록공고) 1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0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) 2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1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3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2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) 9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-128호(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) .. 10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 - 5 호

공 인 등 록 공 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공인 등록 사유: 옥외광고정비기금사업 시행에 따른 공인 등록
2. 공인 등록일: 2022. 1. 3. (월)
3. 공인명 및 인영

등록공인 목록

공 인 명	공인(인영)	공인의 규격	비고
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원인		2.0cm × 2.0cm	
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인		2.0cm × 2.0cm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

「경관법」 제12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경관위원회로부터 승인된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계획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계 획 명: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계획
2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3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6층)
4. 주요내용
 - 가. 목표연도: 2030년
 - 나. 대상면적: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지역(A=18.21km², 송도동제외)
 - 다. 주요내용
 - 경관현황조사: 경관자원, 경관의식, 관련계획 및 경관사례 조사·분석
 - 경관기본구상: 기본방향, 미래상, 추진전략 수립 및 경관구조 설정
 - 경관기본계획: 경관 권역·축·거점계획,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
 - 경관가이드라인: 계획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
 - 경관실행계획: 관련법규 및 제도, 경관행정조직 개선방안, 경관사업·경관협정 추진방안 등
5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(☎032-749-86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2-11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자치법규명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 시행’ (2022.1.13.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의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정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 관련 사항 정비
 - ‘의회사무국’ (제2조제1호) 및 ‘연수구 의회 의원과 산하 공기업’ (제3조제3항) 삭제

- ‘지방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’ 조항을 신설하여 연수구의회 후생복지제도 별도 운영 전 까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 (제13조 및 부칙 제2조 신설)
- 기타 용어정비 (제8조제2항, 제11조제2항 등)

4. 의견제출
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2. 1. 10.(월)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 - 연 락 처 : 전화(032-749-7192), 팩스(032-749-7159)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- 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5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(안) : 붙임

[붙임1] 개정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, 의회사무국” 을 “본청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연수구 의회 의원과 구 및 산하 공기업” 을 “구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입원” 을 “실손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)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특례)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및 의회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후생 복지는 「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제 12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이 별도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<u>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</u>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<u>연수구 의회 의원과 구 및 산하 공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선택기본항목 :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<u>입원의료비보장보험</u>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 <u>본청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: ----- ----- ----- <u>실손</u> ----- ----- -----</p>

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협의회회의 구성 및 임기) ①
(생략)

② (생략)

1. (생략)

2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
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
소속 공무원 1인

③ ~ ④ (생략)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협의회회의 구성 및 임기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1명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방의회회의 의장과 통합 운
영)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
의회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
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
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
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2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5조 규정에 따른
“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” 수립에 대하여
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계 획 명: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
2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6층)
3. 주요내용
 - 가. 목표연도: 2030년
 - 나. 대상면적: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지역(A=18.21km², 송도동제외)
 - 다. 주요내용
 - 여건분석 : 현황 및 실태조사, 관련계획 및 사례 조사·분석
 - 기본구상 : 기본방향, 미래상 및 목표, 추진전략 수립
 - 기본계획 :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
 - 가이드라인: 계획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
 - 실행계획 : 관련법규 및 제도, 기본계획 및 실행원칙 활용방안 등
4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
(☎032-749-86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
「지방세법」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·제3항·제7항의 규정에 의거,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I. 2022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「지방세법」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(「소득세법」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·고시하는 금액)

나. 건물별 시가표준액

- ①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
-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·층별 가중치 등 반영
- ②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
- 신축단가에 구조·용도·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
- ③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방식
- 거래가격, 제조가격 등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
- ④ 가감산특례(가산대상 및 가산율, 감산대상 및 감산율)
- ⑤ 증·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⑥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⑦ 경과연수별 잔가율

2. 세부결정사항

연수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
II.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차량(87,088종)

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

나. 기계장비(12,882종)

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
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

다. 선박(140종)

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
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

라. 항공기(244종)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

마. 시설물(3,611종)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

바. 부수시설물(2,354종)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

사. 입목(97종)

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

아. 어업·양식업권(235종)

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

자. 회원권(3,809종)

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

차. 지하자원(343종)

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

2. 세부결정사항

연수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
부 칙

제1조[시행일]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